Planning special [1] 기획특집

곽형근 부이사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장

■ HACCP 제도정착 노력과 소비자 인식 변화 필요!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발생은 소비자에게 모든 식품의 위생관리 전반에 불신을 갖게 할 수 있어 그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추진해 온 축산물 위생 · 안전성 정책적용 추진이 탄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축산물 위생 · 안전성 제고 대책중에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은 도축장에 의무적용을 시행하였으며 축산물가공장에 위생확보를 위한 자율적용을 유도하고 축산물의 냉장유통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엄격한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위해관리 필요성의 대두로 생산단계의 위생관리를 위해 배합사료공장과 농장에 HACCP제도를 도입하여 사료부터 축산물까지 추적관리 연계체계를 구성하였다.

그 일환으로 축산물의 기초가 되는 원료사료의 도입선택시 위해물질에 대한 수입조건을 강화된 법의 규정 내에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사료도 식품이다' 라는 위생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금년에 시작되는 농장 HACCP의 기반여건을 조성하였다.

사육단계 HACCP는 오남용되는 동물약품의 사용규제는 물론, 가축사육부터 소비단계에까지 위해요소 예방과 감소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와 우리원은 이러한 노력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관련기관(국방

부, 교육청)에 HACCP인증업체의 생산품을 이용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하여 왔으나 구매처의 위생개념 및 인식제고 등의 몇몇 장애요소가 HACCP적용 업계의 노력 등 축산식품위생 체계구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축산식품 위생안전! 무엇이 시급한 과제인가?

HACCP 적용대상은 농장부터 판매장에 이르기까지 총 7만7백70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도축장 HACCP 운용수준과 경영실태를 평가해 볼 때 과거의 운영수준에 비교하여 놀랄만한 발전을 가져왔다. 적용작업장 위생수준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축수수료 징수계획)등의 혜택부여가 조속히 진행되어 관련업계의 의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HACCP적용의지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축산물생산 관련 사업장에 HACCP적용 확대를 통하여 위해발생 시 역 추적관리가 가능한 이력추적시스템의 적용이 필요하다.

■ 가축사육단계 HACCP적용과 축산식품 위해관리 연계체계의 의미

도축 · 가공 · 판매장 등에만 적용되던 HACCP제도가 배합사료공장에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평가됨으로써 농장HACCP 시행기반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HACCP인증 배합사료공장의 사후관리가 병행 추진됨에 따라 생산단계 위생관리는 가축사육단계의 안전성에 초석을 다지게 되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안전성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돼지농장 HACCP시작으로 년차별로 모든 사육축종에 확대 · 적용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도 농장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운용실적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고,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질위생인증을 위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평가기준에는 방역관리, 종축관리, 출하관리, 사양관리, 생산기록 등 항목에 대한 관리수준과 기록여부 및 관리자의 숙지 등에 대하여 평가된다. 특히, 사용약품 및 가축이동 증명서의 발행, 접수 등의 관리체계구성이 요구되며 관리자들의 교육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방문, 확인 점검하게 된다. 이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농장의 축산물 생산 및 경영능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HACCP인증 배합사료공장이 앞장서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 자연스럽게 위해관리에 대한 추적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축산물위생안전성관리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사료공장HACCP적용 확대 및 사후관리와 개선방향

'사료도 식품이다' 라는 축산식품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수행된 사료공장HACCP 인증제도는 인증배합사료공장들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인증배합사료 사용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가점 부여 등으로 중소규모공장들까지 자율적으로 확대실시 되고 있다. 현재, 중소규모의 배합사료공장에 대한 HACCP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심사기준이 외국보다 높아 인증획득을 위한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하다. 심사기준을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라고 적용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투자 비용발생이 위해관리를 위한 기본설비 개선사항으로 판단되나 경영진에서는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저울질을 하고 있으며 공장의 관리직과 현장근로자는 필요불급하다고 인식하여 상충된 의견을 갖고 있다.

인증 받은 공장에서는 경영비의 일시적인 증가에 비해서 상대적인 이점에 만족하며 생산직 직원들의 관리체계의 편리성과 위생사료 생산으로 인한 고품질의 안전성제품 확보에 자부심을 갖고있다고 확인된다. HACCP적용 후, 자동적인 위해관리 체계의 운영으로 가동율이 높은 공장일수록 경제적인 효율성이 크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적용을 원하는 공장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순으로 생각하여 적극적인 대응체계로서 경영논리를 구성해야할 것이다.

인증실시 후 1년이 경과한 인증배합사료공장들에 대한 사후관리(46개 업체)의 평가에서는 개선조치에 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방향의 제시와 재사용 제품들의 방역관리체계구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HACCP적용 배합사료공장에서는 리콜사료에 의한 미생물오염 예방을 위한 세부규정을 관리기준서에 명시하고 철저히 준수함으로서 농가로부터 신뢰도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돼지농장HACCP적용과 실행 지침

금년부터 시작된 돼지농장HACCP은 방역과 위생 및 동물복지는 물론, 농가에서부터 도축장 전까지의 사육 · 출하(운송)단계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정된 관련협회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에서 마련한 관리기준은 각 농장특성에 적합한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기록관리를 통해 농장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리자와 종업원간의 업무소통이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농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장HACCP 적용 시에 농가가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다음과 같다.

- HACCP 기본절차에 따라 원칙적인 위생관리지침이 설정되어야 하며 농장의 환경과 시설 및 사양관리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생산단계별 (번식축, 포유축, 육성 및 비육축, 출하동물) 세부관리 절차를 구분하여 각 사육단계에서 중점관리 되어야 할 살모넬라, 잔류동물약품, 주사침 등 위해요소들에 대한 CCP설정과 관리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 문서기록의 세부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관리기준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무엇보다 경영주의 HACCP도입 의지와 생산성 극대화에 대한 비용절감 방안으로의 활용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농장HACCP 시행은 소비자들의 신뢰확보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또하나의 안전성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방화시대를 대비한 축산물안정성 정책과 실행지표

개방화시대에 있어 품질경쟁력의 핵심은 위생 및 안전성으로 HACCP적용은 축산식품의 수출입에 반드시 필요한 규제 · 제약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식품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품질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향후의 국제 경쟁력에 대비해서는 위생적이며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공급이 실행되어야 한다.

도축 · 가공장에 HACCP 제도도입의 결과가 외형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축 · 가공 · 유통 이후과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행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내년부터 300㎡이상 면적의 음식점에 식육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광역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해 2013년까지 브랜드 출하비율을 50%까지 확대하고 사육단계에서는 인공수정 확대 및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강화 등을 통한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도 60%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농장단계 품질위생인증제는 도축장HACCP 등 농장단계이후의 위생관리체계와 연계하고, 향후 가축출하증명, 가축개체 확인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한 · 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영향이 국내 축산물의 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과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세부적인 실천지침에서는 사육단계에서 농가교육 및 사료 · 동물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의 사육단계 HACCP 모형을 개발, 보급하여 사육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 및 의무사항을 법제화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HACCP 적용 희망 농가 중 브랜드참여농가와 친환경축산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44개 농장에 컨설팅을 실시토록 계약한바있다. 또한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사료내 중금속과 톡신, 미생물,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로부터 확고한 신뢰의 구축과 FTA와 관련한 수입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가축사육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안전성 정책이 조기정착 되도록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